

[긴급토론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 일시 : 2017년 8월 4일 낮2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공동주최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회 개요

◎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 발제01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제02

- 이양구 (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 지정토론

- 김미도 (연극평론가)
- 김선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김일권 (시네마 달 대표)
- 이명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의 분석과 과제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I.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2017고합10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함)

1. 유죄부분

가. 노태강에 대한 사직요구(김상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대통령 공범)

피고인 김상률은 대통령, 김종덕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문체부 장관, 교문수석의 직권을 남용하여 노태강으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였다.

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피고인 김기춘, 김상률, 김소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대통령 공범 인정 안됨¹⁾)

1) 민간단체보조금 TF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 피고인 김기춘의 지시 등에 따라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 등은 2014. 4. 4. 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 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주요 부처별 공모사업 현황 등을 취합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 등을 논의

○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은 위 TF의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 작성

1) 아래 항에서 다시 설명, 판결문 135~

1. 중앙정부 보조금 차단

□ 민간단체보조금 TF 운영

- [추진배경] 불법시위, 정권반대 운동 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실태파악 및 근본적 조치 미흡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사업주체가 다양하고, 선정권한도 개별부서에 위임되어 있어 총괄적 실태파악 어려움 발생

- [TF구성] 정무수석 주관 하 주요부서(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참여, △민간경상보조금, △주요부처 공모사업 현황 등을 확보해 전수조사 실시(4. 4.~5. 23.)

※ 중앙부처가 직접 선정·교부하는 보조금 전체를 파악(기금 등 포함)

□ 조치결과

- [문제예산차단] 총 130건, 139억 원의 문제예산 확인·조치(첨부 #1)

- [조치 미흡한 분야] 국가인권위는 부처에서 조치불가 입장. 입장 표명 언론사지원 단계축소(홍보기획), 민주노총지원 단계축소(고용노동)

<문제예산 확인·조치 결과 (2013.~2014. 4.)>

총 문제예산(건) 130건, 금액 139억 원,

문체부 문제예산(건) 93건, 금액 80억 6,300만 원

- [DB운영으로 지속감시] 3,000개의 문제단체(좌파단체, 불법시위참여 등)와 8,000명의 좌편향인사(문○인·舊민노당 지지 등) DB 구축, 지속 보완

- [시스템구축] 공익법인에 대한 국세청 결산공시양식 개정(14. 3.), 수입·지출신고 의무화 ⇨ 국세청자료로 보조금분석 가능(16년 이후)

2. 좌파인사 확인·조치

□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배제

- 자체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주요부처(국무총리실, 안행부, 교육부, 문체부, 노동부, 복지부)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파악, 총 26명의 좌편향인사 확인·조치 (첨부 #2)
- 심사위원 조치 현황 문체부: 12명

□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

- 각 부처별 463개 정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총 70명의 좌편향인사가 66개 위원회에서 활동(중복제외)중임을 확인

⇨ 관계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위원회 특성 상, 임기만료일 도래하는 시점에 단계별로 해촉할 예정 (첨부 #3)

- 비서관실별로 해당부처 핵심인사(차관, 기획조정실장 등)를 통해 통보

<정부위원회 위원 확인 결과>

문체부: 5명

- 좌편향인사가 다수 포진한 정부위원회는 회의개최를 지양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개최횟수가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 검토

3.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

□ 모태펀드 운용상의 문제점

- 정부-민간이 함께 만든 모태펀드가 문화·영화계정에 투자되고 있으나, 작파 문화운동의 자금창구가 되는 사례 빈번
 - * Ex) 영화 <변호인>, <부러진 화살>, <화려한 휴가> 등 정치편향적 작품에 투자
- [창업투자사] 親盧계열과 대기업(CJ·롯데)이 문화펀드 운용을 독식
 - * (주)유니온투자파트너스(1,730억 원), (주)MVP창업투자(240억 원), (주)개피탈원(120억 원) 등이 참여정부의 후원으로 급성장했고 현재까지 대규모 문화펀드 운용 중
- [문체부] 대규모 정부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사들의 독립성 보장을 내세워 창투자사들의 행태를 용인
- [(주)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사들을 실질적으로 선정·관리하는 기관이나 편향적 투자관행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상황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8에 의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추진계획

- 창투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한국벤처투자의 임원진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로 대폭 교체 건의
 - (대표이사) 전문성을 명분으로 금융권 출신에게 맡겨 왔으나 실제로는 벤처창업투자 분야 경험이 없는 증권사 출신
 - (간부) 3명의 본부장급 간부에 의해 사실상 투자가 결정되는 상황으로 전원교체 필요(기획조정실장, 투자운용본부장, 투자관리본부장)
 - (감사) 임기만료에 따라 내정인사에 대한 검증절차 진행 중

4. 관심·조치가 필요한 분야

□ 조치가 필요한 부처

- (문체부) 문화계 작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문제단체 지원을 관행적으로 인식, 간부공무원들의 개선의지 부족
- ⇒ 의지와 개혁역량을 갖춘 장·차관 임명 후 주요부서 관리 강화. 산하기관은 구조조정을 통한 통·폐합 검토 (33개 기관, 18개 위원회)
 - * Ex) 작파 성향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한국컨텐츠진흥원으로 대거 이관

첨부 1.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 현황

첨부 2.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 현황

첨부 3.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

2) 문체부 산하 기관의 설립목적과 독립성 보장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 : 독립된 회계로 별도 운용·관리하며, 소속 위원들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함.

3)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피고인 김기춘, 김소영)

피고인 김기춘, 김소영은 신동철,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비서실장, 문체비서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예술위의 책임위원 선정에 부당개입하게 함으로써 19명을 2014년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하달

- 신동철 소통비서관 2014. 5.경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문체부와 예술위 등 산하기관이 정부예산, 기금 등을 지원한 개인·단체 중 고은 시인 등 야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정권반대운동 참여 등 전력이 있는 개인·단체 약 80명의 명단 →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건네주면서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지시 →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보고한 다음 교문수석실 자체적으로 예술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보고서 별도 작성하여 피고인 김기춘과 대통령에게 보고
- 2014. 5. 초순경 피고인 김소영은 문체부 제1차관에게 명단 전달 → 차관은 유진룡 장관에게 보고
- 문체부 공무원들은 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부서 상호간에 이를 공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면서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기금·예산지원, 공연장·상영장 대관 등), 각종 인선(기관장, 임원, 심사위원 등), 각종 훈·포장 등의 수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기준삼아 여기에 포함된 개인·단체가 최대한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부당한 업무를 수행

5)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2014. 10.경 피고인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김종덕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을 받고,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① 문화예술(문예기금 지원, 비엔날레 사업), ② 콘텐츠(영화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 ③ 미디어(우수도서 선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청와대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심사 강화(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지원방침을 심사에 적용),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 예술감독 선

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검토,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문제영화제 차년도 지원예산 삭감), 심사위원 자격기준 강화(문제 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등] 정리·취합 후, 이를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

2014. 10. 21.경 김종덕 장관은 김기춘에게 위 보고서 보고, 김기춘은 보고서대로 추진 지시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과장이 참여하는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하면서 장관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이를 김종덕 장관과 교문수석실에 보고

6)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가) 2015년 문예기금 등 사업 (피고인 김기춘, 김상률, 김소영)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과 관련하여 2015. 7. 중순경 청와대에서 하달된 5명을 심사과정에서 배제하고 지원금 수혜자를 당초 예정한 99명에서 70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 발표. 이를 포함하여 2014.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예술위가 주관하는 2015년 문예기금 사업 중인 아르코대학교예술극장 정기대관 사업, 공연예술비평 연구활성화 지원사업, 다원예술 창작 지원사업, 문학행사 및 연구 지원 사업,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사업,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사업, 교정시설·군부대·농산어촌·사회복지시설·임대주택 순회사업,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공연예술 작산실(연극-시범공연)사업,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대학로 예술극장 3관 대관, 공연예술 창작산실(연극-대본공모)사업, 공연예술공간 지원사업, 주목할만한 작가상 선정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화예술계 지원 선정 배제대상자 명단이 수시로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에 순차 하달되어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되었고, 결국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김기춘, 김상률, 김소영은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문체부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각 직권을 남용하여 지원 대상자들을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6년 문예기금 등 사업(피고인 김상률, 김소영)

7) 영화 관련 지원배제

가) 동성아트홀 지원배제 (피고인 김소영)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심의가 진행중이던 2014. 4. 24. 피고인 김소영은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문체비서관, 문체부 공무원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을 기획한 동성아트홀이 신청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영진위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지원심사에 부당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부산국제영화제, 인디스페이스 등 지원배제(피고인 김기춘, 김상률, 김소영)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이 영화 '다이빙벨'을 2014. 10. 6.경 상영하기로 발표

-> 김기춘은 2014. 9.경 실수비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 2014. 10. 2.경 실수비에서 '다이빙벨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통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 김종덕 장관이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연락하여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 문체부 제1차관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같은 취지의 요구

그럼에도 영화 '다이빙벨' 상영, 2014. 10. 23.경 일반상영관 개봉을 앞두고 피고인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 무렵 실수비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하여 대관료 등 자금원을 추적하여 실체를 폭로하라'는 취지의 지시. 이런 지시를 순차 전달받은 피고인 김소영은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과 사무관 등에게 '다이빙벨'의 상영이 예정된 영화관의 현황과 그 영화관들에 영진위의 영화기금이 지원되었는지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여 교문수석실로 매일 보고하라.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라'고 지시.

문체부 이순일 사무관은 영진위 문봉환 부장에게 연락하여 이런 청와대의 지시를 전하였고, 영진위 직원은 2014. 10. 17.경 영진위가 지원 중인 예술영화전용관 '씨네코드선재'관계자에게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자제해 달라는 뜻을 전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결국 영진위가 지원 중인 수 곳의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되었다.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소위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포함한 영화를 상영한 것에 대한 제재로 일부 예술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방침 결정, 피고인 김상률, 김소영 등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피고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 2014. 12.경 문체부에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다음 해 영진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 문체부는 김종덕 장관에 대한 보고를 거쳐 일거에 지원금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 영화계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문체부와 영진위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2014년 14억 6,000만원에 달하던 지원금을 2015년 8억원으로 삭감하기로 조정하여 영진위에서 2015. 4. 30.경 최종결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상률, 김소영 등은 김종덕 장관 등을 통해 영진위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영진위는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심사과정에서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와 아이랑 시네센터를 지원대상에서 배제

8) 도서관 관련 지원배제

가) 2014년 세종도서 (피고인 김기춘, 김소영)

2014. 7. 30.경 출판진흥원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 보급사업' 공고, 2014. 11. 4. 경 763종의 도서가 2차 심사 통과.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등이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장, 콘텐츠팀장 유신영에게 '세종도서 2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목록을 건네 달라고 요청하여 위목록을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미라 행정관에게 송부. 피고인 김소영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정부비판, 이념편향 서적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잘 챙기라'는 지시를 받은 김미라는 위 목록을 검토하여 9종의 도서를 문제도서로 선정하여 김소영에게 보고한 다음 문체부 사무관에게 알려주었고, 사무관은 출판진흥원 본부장과 팀장에게 위 도서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

출판진흥원 본부장과 팀장은 2014. 11. 14.경 실시된 세종도서 최종 3차 심사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달된 문제도서가 선정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9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

나) 2015년 세종도서(피고인 김상률, 김소영)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제. 한편 김소영은 김미라가 신청자목록을 검토한 결과와 이유 등을 피고인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고, 그 후 문체부로부터 최종 선정결과를 보고받아 이를 피고인 김상률에게 보고.

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1) 피고인 김기춘

2016. 12. 7. 제2차 국정조사 청문회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이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

2) 피고인 조운선

2016. 9. 27. 문체부 등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 출석하여 선서, 2016. 10. 13.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습시다",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보고받았습시다.

그러나 피고인 조운선은 2016. 9. 5.경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문화예술정책실장 박영국 등으로부터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조치의 추진배경과 진행경과가 기재된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을 보고받아 문체부에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을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국정감사 전날인 2016. 10. 12. 한 국일보가 9,473명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확인되었다는 보도를 하자 그날 예술정책관 으로부터 오진숙이 김관중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9,473명의 명단이 존재한 적이 있었다고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2. 무죄부분

가. 1급 공무원 사직관련 피고인 김기춘, 김종덕의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1급 공무원을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나. 영화부분 지원배제

1) 동성아트홀 지원배제 - 김소영만 유죄(자백), 나머지 피고인들 무죄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지원심의를 보류한 것은 피고인 조운선이 정무수석에 부임하기 전인 2014. 4. 24.임. 이후 지원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조운선과 정무수석실이 그 계획을 지시·승인 하거나 그 실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피고인 김기춘의 경우에도 2014. 4.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김기춘이 동성아트홀을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그와 같은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지원심의를 보류한 것은 피고인 김종덕이 문체부 장관에 부임하기 전인 2014. 4. 24.임, 최종 결정 2014. 8. 25. 직전인 2014. 8. 20.경 문체부장관으로 취임한 피고인 김종덕이 그 계획을 지시·승인 하거나 그 실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2) 인디플러스 다이빙벨 상영요청 거부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된 후 일반상영관 개봉을 앞두고 되자, 피고인 김기춘의 지시와 실수비에서의 논의 등을 통하여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다이빙벨의 상영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교문수석실의 지시로 문체부의 사무관 등이 수시로 다이빙벨 상영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보고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이 2014. 11. 6. 영진위에 영진위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에서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영진위가 인디플러스에서의 다이빙벨 상영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당시 영진위는 인디플러스의 상영영화 프로그래밍을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에 위탁하고 있었던 사실, 영진위의 문봉환 부장이 문체부 이순일 사무관에게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의 요청을 보고하자 이순일이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인디플러스는 영진위가 소유·관리하는 극장으로 영화 프로그램 및 상영에 관한

권한은 최종적으로 영진위가 가지고 있으므로, 프로그래밍을 위탁받은 독립영화 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이 다이빙벨 상영을 요청하더라도 영진위가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의 요청을 받기 전에 인디플러스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체부의 정상원 과장, 이순일 사무관 등이 인디플러스에서의 다이빙벨 상영 문제를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보고하거나 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 영진위의 문봉환 부장은 문체부 이순일 사무관과 협의한 후 영진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다이빙벨 상영요청을 거부한 것이다(증인 문봉환의 진술).

이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다이빙벨의 상영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조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순일 사무관이 ‘무조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영진위가 청와대와 문체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영화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당하여 다이빙벨 상영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영진위의 문봉환 부장 등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배제

증거에 의하면 문체부 이순일 사무관이 2015. 8.경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목록을 신○필 행정관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신○필은 이를 피고인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전화로 문체부에 박찬경의 공모작품 ‘산’, 연출자 이송희일·제작사 (주)시네마 달의 공모작품 ‘연인들’, 연출자 오열·제작사 ‘자파리필름’의 공모작품 ‘바닷감수광’ 등 3개 작품을 지원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이○일이 2015. 8.경 영진위 이○렬 산업진흥본부장과 산업진흥본부 팀장에게 위 3개 작품을 지원 배제대상 작품으로 통보하여 준 사실, 위 3개 작품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신○필은 이 법정에서 당시 문체부 정○원 과장이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 중 위 3개 작품이 문제가 되지만 작품 수준이 높지 않아 선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피고인 김소영에게 보고한 후 위 3개 작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달라는 피고인 김소영의 지시를 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소영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렬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위 3개 작품을 최종 선정에서 배제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위 3개 작품은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신○필과 김○영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작품들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사실만으로 이○렬 등이 그 선정 배제를 위해 어떤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영진위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목록(수사기록 7,044쪽)을 문체부에 송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영진위는 영화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가진 문체부에 지원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목록을 송부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렬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로 말미암아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조윤선 - ‘블랙리스트’ 관련 모두 무죄2)

II. 판결의 분석과 과제

1. 국가정보원의 국정원법 위반사실 확인

가. 판결문에 등장한 국정원

1)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2013년 하반기 연극 ‘개구리’ 등과 같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개봉된 상황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시정 필요’, ‘좌성향 세력의 세 확산 기도 등 문화관련 이념문제’ 정보보고 문건 등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보고되면서,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정부비판 여론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부적절하다는 기조가 청와대 내부에 확산되었다”(판결문 7쪽)

2)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피고인 김기춘은 2014. 2.경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좌파단체, 좌성향 작가 등이 포함되었다. 그 원인은 심의위원회에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하반기 심사부터 이러한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나서 공모심사 체계를 개선하고 심의위원 임명시 과거 활동경력은 물론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정원 정보 보고 문건을 전달하면서, 같은 취지로 문예기금 운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모철민은 그 무렵 유진룡 문체부 장관에게 위 국정원 문건 등을 전달하면서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판결문 7쪽)

“김기춘이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전달하여 모철민이 유진룡 장관에게 전달한 국정원 작성 문건의 주된 내용”(판결문 66쪽)

2) 아래 II 항에서 검토

- 예술위는 2014년 상반기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는데 지원대상에 좌파단체인 민예총 산하 '민족미학연', 이념편향성 연극으로 물의를 빚은 극단 '혜화동1번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작성향 '작가회의' 소속으로 정부를 비판해 온 고○철, 박○구, 신○목 등이 포함됨
- 이는 지원대상 선정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에 맡긴데다, 심의위원도 대중적 인기·지명도를 우선 고려하는 관행에 따라 작성향 인물들이 포함되기 때문임
- 건전문예계에서는 이러한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① 문체부가 나서 예술위 공모심사 체계를 심의위 추천(1.2배수) → 이사회승인(2차)으로 전환, 이사회에서 작품을 최종 선정토록 개선하고, ② 심의위원 임명(3월)시 과거 활동경력은 물론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건전 예술인사를 늘려야한다고 제언

“문체부 사무관 오진숙 등이 유진룡 장관의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작성하여 교문수석실에 송부한 ‘문예기금지원사업 관련’ 보고서 내용의 요지는, 국정원 문건과 유진룡 장관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논란이 된 사업들(민족미학연, 혜화동1번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고○철, 박○구, 신○목 등)의 구체적인 선정경위와 심의기준, 2014년 책임 심의위원 선정계획, 향후대책(문체부 사전협의 의무화 등 추천방식 개선, 특정성향, 반정부행위 관여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단체 배제 등 심의위원 기준 강화) 등이며, 위 보고서에 청와대의 검토를 위하여 분야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3)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하달

“피고인 김○영은 2014. 5. 초순경 조○재 문체부 제1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이 명단을 전달하면서 ‘박○혜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저항과 비판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윗선의 지시이다. 이 명단은 정부에서 만든 것인데 극비리에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가지 않게 하라’고 말하였고, 조○재 차관은 이를 유○룡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문체부 공무원들은 각 소관부서별로 위 지원배제 명단에 포함된 개인명·단체명을 비롯하여 그 후 문체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전화연락 등을 통해 수시로 문체부에 하달한 지원배제 개인명·단체명,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에서 정부의 기금지원 등을 문제 삼은 개인명·단체명, 문체부에서 국정원에 지원배제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 받은 개인명·단체명 등을 그때그때 메모하거나 별도의 컴퓨터파일로 취합해 가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소위 ‘블랙리스트’)을 계속 업데이트 하였고”(판결문 14쪽)

4) 문예기금 지원심의의 부당개입

“국정원에서 작성한 정보보고 문건은 거의 매일 비서실장 및 해당 분야의 수석비서관에게 전달되었고,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에게 관련부분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수석비서관은 검토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 중 해당 부분을 관련 비서관과 공유하면서 업무를 진행하였다”(판결문 73쪽)

“피고인 김기춘은 2013. 9.경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 일탈행태 시정 필요’라는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을 전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판결문 74쪽)

광역지자체 산하 12개 문화재단들이 지자체장 정실인사, 이념 편향적 사업 치중, 예산 졸속집행 등 불공정 운영되고 있어 감독 강화 긴급 여론

- 서울·부산 등 전국 12개 시·도는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문화행사·문화예술인 양성·문화재 발굴 등에 연간 2,100억 원의 예산을 집행
- 단체장의 인사권 오남용, 간부·사업의 좌편향 등 문제점
 - 단체장들이 선거 보은차원에서 캠프 출신을 이사장에 임명하거나, 정치성향에 부합하거나 이념편향적인 인물들로 이사진을 구성 주요사업 좌쏠림이 지나치다는 논란
 - 서울문화재단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김○현이 이사장에 선임되고 이사진 12명 중 전교조·참여연대 출신 등 좌성향 인물 5명, 광주문화재단은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월북음악가 정○성 추모음악제, 대통령님 모독그림을 그린 홍○담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광주 민예총 주관 행사 지원, 부산문화재단은 한대련 등 좌편향 단체 후원 확대
 - 특정단체·개인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강원문화재단 평창비엔날레 주관 민예총에 일임, 충북문화재단 민예총 소속 단체가 지역협력형 사업 독식, 서울문화재단은 윤○술(국보법 폐지 연극 연출가) 2회 선정 (6,000만 원 지급)

문화계 건전인사들은 문화재단의 좌편향·독단적 운영으로 지역사회 이념오염은 물론 문화융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 ① 감사원·문체부에서 국비지원 사업 감사 등을 통해 문화재단 운영 실태를 면밀 점검, 보조금 삭감·불탈법 행위 의법 조치 등 정상화를 건인
- ② 이사진 선임시 관련분야 근무경험 등 일정 자격요건 의무화 및 지방의회 등을 통한 검증 절차를 강화, 인사 부조리를 최소화
- ③ 건전 언론·단체와 협조, 이념편향·예산낭비 및 과도한 제 몫 챙기기 행태를 알려 국민 공분 조성 및 경각심 고취 필요성 제언

“그리고 2013. 10.경 교문수석실에 ‘지난 정부 이후 정부지원축소 및 스크린 강화로 좌성향 세력이 많이 위축되기는 했으나 부분적으로 세 확산 기도가 감지된다. 국립단체는 필터링을 위한 공모제 확대 및 심사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한예종 총장이 좌성향 교수를 보직교수로 임명하는 것에 유의하고, 연구실적이 부진한 좌성향 교수의 퇴출유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이 전달되었고, 교문수석실은 이를 문체부에 하달하였다”

“한편 문체부는 청와대를 통하여 지원신청자 목록을 검토 받는 것과 별도로 국정원 연락관을 통하여 국정원에도 지원신청자 목록을 보내 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따로 받

기도 하였다”(판결문 82쪽)

5) 영화관련 지원 배제

○ 인디스페이스 등 지원배제

“피고인 김기춘은 실수비 회의에서 송○용 당시 교문수석에게 반정부적인 내용의 영화가 특정 독립영화상영관에서만 상영되는 것에 관하여 독립영화상영관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방법을 개선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일이 있다.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는 2015. 1. 22.부터 2015. 1. 27.까지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영화 다이빙벨, 자가당착을 상영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김상률은 영화 자가당착에 대한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을 피고인 김소영에게 전달하면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하였다”(판결문 102쪽)

6) 도서관련 지원 배제

“2014. 2. 18.경 주간지 미래한국은 2013년 문체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체계바라와 랄랄라 라틴아메리카’ 등 7종의 도서가 반미·종북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정치 철학과 배치된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도서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실수비에서의 지적이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체부에 전달되었다. 위 미래한국의 보도와 그 무렵 예술위의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문제 삼은 국정원의 문건 등에 관하여 유진룡 장관이 2014. 2. 21.경 피고인 김기춘에게 대면보고 한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중 도서 부분과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판결문 109쪽)

7) 피고인 조운선의 위증

“피고인 조운선은 취임 직전에 우○일 국장과 김○훈 과장으로부터 예술위 사업과 관련된 검열논란, 건전콘텐츠 확산 방안 등에 관한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다. 그 후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박○국 실장으로부터 ‘(대외비)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위 보고서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문체부의 문화 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의 관리와 운영이 시작된 배경, 청와대·국정원·문체부를 통한 지원배제의 시스템, 그로 인한 문제점 등 핵심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박○국은 구두로 지원배제시스템의 존재와 그 배경, 그로 인한 문체부 직원들의 고충 등을 직접 설명하였다. 피고인 조○선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청와대의 지시로 문체부에서 좌파·반정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을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판결문 130쪽)

나. 국정원의 불법행위 및 직권남용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대법원은 예시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열거규정이며,³⁾ 국가정보원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내란죄 등과 같은 특정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벗어나, 기업과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그 기업 등의 영업 및 그와 관련된 범죄 의혹에 관한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및 언론 등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관리한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인 기업 등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그로 인하여 기업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2009. 5. 29. 선고 2008가합40668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

국정원이 예술위나 시·도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계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와 관련부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관리한 행위는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이다.

이 사건 판결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는 주된 기준은 보고, 승인, 지시 등인데, 국정원은 정보 보고를 통하여 배제하여야 할 명단, 개선방안을 하달하고, 문체부 공무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원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정원 역시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⁴⁾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특히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겠지만 국정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정보원법 제2조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3)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설립의 근거를 두고 국가정보원법에서 그 직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이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규정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정보수집활동의 범위에 관하여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라고 명확히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일반적인 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의 ‘기획’을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것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수집활동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국가정보원의 설립 목적, 비공개적 업무 성격, 변화된 안보개념 등을 이유로 위 규정을 예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4) 국정원법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공범여부

가. 판결의 내용 - 공범관계 인정 안됨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 '좌파배제, 우파지원'의 기초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범행을 실행하기 전 또는 실행할 당시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청와대 또는 문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교문수석 또는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①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하여 당선되었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국정기조를 강조하고 그에 따른 정책 입안과 실행을 지시한 것을 두고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한 기능적 행위 지배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피고인들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실행하기 전 또는 실행할 당시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또는 문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크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 내용이 어떤 절차와 방식을 거쳐 어느 정도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일부 보고는 요약된 서면보고 또는 그보다 더욱 간략한 대수비 보고자료 형식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대통령이 이를 승인 내지 지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③ 대통령이 문예지 지원문제, 건전영화 지원문제, 보조금 집행문제, 중복 성향 서적의 도서관 비치문제 등에 관해 직접 언급하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지시내용 자체가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지시가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범행계획에 대한 지시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대통령의 공범관계 부정에 대한 검토 -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 위반은 헌법 위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 위반(헌법 제7조 제1항⁵⁾ 등 위반)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므로 누구보다도 '국민 전체'를 위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

5)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종교·지역·사회단체,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고 판시한 바 있다(2016헌나 1).

이 사건 판결은 대통령이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과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대통령은 단지 ‘의견을 표명’한 데 그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문예지 지원문제, 건전영화 지원문제, 보조금 집행문제, 중복 성향 서적의 도서관 비치문제” 등에서 직접 언급하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판결이 말한 ‘국정기조’에 따라 모든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구체적으로 순차공모해 가면서 지원배제 등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하여 모두 처벌되었는데 유독 대통령의 명령만 합법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이 사건 범죄의 심각성은 판결문 내의 양형이유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는데 판결은 “우리 문화예술진흥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문예기금과 영화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예술위와 영진위에게 맡기면서 그 위원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정치권력 또는 문화관료의 간섭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의 자율적 결정에 맡긴다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는 그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문체부는 세종도서 사업을 출판진흥원에 위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은 이런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할 개인·단체를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하달함으로써 예술위 등의 존재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하였고 그 공정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 과정에서 배제의 잣대로 사용된 ‘좌파’, ‘야당지지’, ‘세월호 시국선언’ 등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 자율적 심사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기준과도 무관한 것으로 그 합리성 또한 인정될 수 없다. 예술가들의 예술창작 활동에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창작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자들에게는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은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아울러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른 지원배제는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활동을 제약할 수도 있어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대통령이 표방한 원칙 자체가 공정성이 없고, 그 이유에 합리성도 없으며,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차별하는 것으로서 표현 활동을 제약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여러차례 언급하였으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통치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조운선의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전부 무죄 부분

가. 이 사건 판결의 내용과 분석

1)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박준우 수석 재임 당시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운영되고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후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이 교문수석실 문체비서관으로부터 문예기금 등 지원신청자 명단을 받아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를 선별하여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무수석실에서 문체부의 문예기금 지급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점검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피고인 조운선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 정관주 비서관이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영화관련 지원배제

가) 동성아트홀 지원배제

영진위가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지원심의를 보류한 것은 피고인 조운선이 정무수석에 부임하기 전인 2014. 4. 24., 영진위가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2014. 8. 25. 동성아트홀을 포함한 5개의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조운선과 정무수석실이 그 계획을 지시·승인하거나 그 실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나) 인디플러스 다이빙벨 상영요청 거부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된 후 일반상영관 개봉을 앞두고 되자, 피고인 김○춘의 지시와 실수비에서의 논의 등을 통하여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다이빙벨의 상영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교문수석실의 지시로 문체부의 윤○원, 이○일 사무관 등이 수시로 다이빙벨 상영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보고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조운선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교문수석실과 정보를 공유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 김○춘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다이빙벨의 상영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초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순일 사무관이 ‘무조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정무수석실에서 인디플러스에서의 다이빙벨 상영요청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이를 검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영진위가 청와대와 문체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영화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당하여 다이빙벨 상영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영진위의 문봉환 부장 등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다)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2014. 9.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이빙벨 상영계획을 발표하자 피고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실수비에서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막으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피고인 조윤선 정무수석은 이러한 실수비에서의 지시 등에 따라 다이빙벨 상영 문제를 비서관들과 논의하고 대책을 지시하였다. 그 대책으로는 국회를 통한 문제제기, 시민사회를 통한 부정적인 여론조성 등이 있었고, 상영이 강행되는 경우 좌석을 일괄 매입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였다.

정무수석실은 아울러 교문수석실에 다이빙벨 상영현황 정보공유 등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인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정관주 소통비서관에게 문체부의 윤○원이 교문수석실에 송부한 다이빙벨 상영 관련 일일보고를 정관주와 공유하였고, 정관주는 이를 피고인 조윤선에게도 전달하였다. 정관주는 2014. 11.경 다이빙벨 상영결과 등 진행상황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피고인 조윤선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정무수석실은 피고인 조윤선의 지시에 따라 다이빙벨 상영 저지와 상영될 경우 그로 인한 파장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교문수석실에 협조요청을 하여 상영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영화 상영에 대한 사후통제로 차년도 지원예산을 삭감한다’는 취지의 김종덕 장관의 2014. 10. 비서실장에 대한 보고를 정무수석실에서 공유하거나 위 보고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신○필이 2014. 12.경 작성하여 보고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전액삭감 방안 보고서, 문체부 이○일이 2015. 3.경 작성하여 보고한 부산국제영화제 반액삭감 등 방안 보고서를 정무수석실에서 보고받거나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는 점, 김○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2014. 9. 3. ‘다이빙벨, 손석희 피소사건(업무방해) - 정무, 교문’이라는 기재가 있어 다이빙벨 상영 문제에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이 공동 대응한다는 지시 또는 논의가 실수비에서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이를 근거로 지원금 삭감 문제까지 공동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정관주가 2014. 11.경 다이빙벨 상영결과와 진행상황을 피고인 조윤선에게 보고했다고 하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시기에 비추어 지원금 삭감에 관한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조윤선 및 정무수석실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인디스페이스 등 지원배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조윤선의 지시로 정무수석실에서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한 대응을 하였고, 문체부의 다이빙벨 상영현황 일일보고 등 자료를 교문수석실로부터 공유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조윤선을 포함한 정무수석실에서 다이빙벨 등 문제영화를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인디스페이스 등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행위를 지시·승인하거나 이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마)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배제

신○필은 이 법정에서 당시 문체부 정○원 과장이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 중 위 3개 작품이 문제가 되지만 작품 수준이 높지 않아 선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피고인 김○영에게 보고한 후 위 3개 작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달라는 피고인 김○영의 지시를 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영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와 대체로 일치하며, 선정 가능성이 낮다는 말을 들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받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정○주의 지시로 문예기금 지원신청자 명단에 대한 검토를 한 소통비서관실 우○준 행정관은 자신이 영화나 도서 쪽 단체를 선별하는데도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무수석실에서 전달받았다면 자신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우○준의 진술만으로 정무수석실에서 이 부분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 목록에서 배제대상을 검토하는 등 위 3개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김기춘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렬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로 말미암아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도서관 관련 지원 배제

가) 정무수석실에서 세종도서 신청자 명단을 검토했는지

피고인 김○영 문체비서관은 이 법정에서 교문수석실 김○라 행정관이 1차적으로 체크를 한 세종도서 신청자 목록을 정무수석실 정○주 소통비서관에게 전달하여 문예기금 지원신청자 명단에 대한 검토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검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정○주의 지시로 문예기금 지원신청자 명단에 대한 검토를 한 정무수석실 우○준 행정관은 검찰에서 자신이 영화나 도서 쪽 단체를 선별하는데도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7,326쪽).

그러나 교문수석실에서 세종도서 신청자 명단을 검토한 김○라는, 문체부로부터 송부 받은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2차 심사 통과자 엑셀자료를 출력하여 다른 직원, 다른 비서관실의 도움 없이 저자를 중심으로 혼자 인터넷 검색을 하여 시국선언 참여자 등 정부를 비판하는 작가를 표시한 후 이를 피고인 김○영에게 보고하였고, 보고를 받은 피고인 김○영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하여 이를 문체부 이○재 사무관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김○라는 세종도서가 아닌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김○중 선임행정관이 문체부에서 신청자 명단을 받아 이를 소통비서관실에 보내 지원배제 명단을 받아 문체부에 전달한 과정을 자신의 담당업무가 아님에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담당하는 세종도서 사업에 있어서는 피고인 김○영이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아 자신이 선정한 결과를 그대로 문체부에 알려 주었다고 하고 있다.

한편 우○준은 이 법정에서, 2014년에 도서에 관하여 명단 검토를 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만약에 했다면 2015년일 것인데, 문화예술 분야 전체를 자신이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도 포함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김○라가 세종도서 사업을 문예기금 지원사업과 구분하여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종도서에 관하여 소통비서관에게 명단을 보내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문체부로부터 명단을 받고 검토 결과를 다시 문체부에 전달한 김○라가 이를 모를 수는 없으므로 김○라가 소통 비서관실의 검토가 이루어진 사실을 모르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김○라가 문예기금 지원사업과 달리 유독 세종도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정○주 소통비서관이 우○준 행정관에게 시켜서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신청자 명단을 검토하여 배제대상자를 선별하는 일을 하였다는 사정과, 위와 같은 피고인 김○영, 우○준의 진술만으로는 소통비서관실에서 정○주 비서관 등이 세종도서 신청자 명단을 검토하여 배제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정무수석실에서 세종도서 지원배제에 관여했는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2014. 11. 25.경 충북 콘서트로 물의를 빚은 신은미가 쓴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도서가 2013년 상반기 우수도서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청와대 실수비에서 이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실, 정○주 소통비서관이 그 무렵 신○미 도서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김○영 문체비서관에게 문의한 사실, 피고인 조○선 정무수석이 그 무렵 정○주에게 우수도서(세종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실과 협의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신은미 도서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는 2014년, 2015년 세종도서 선정과 직접 관련이 없고, 피고인 조윤선이 그 취소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정관주는 신은미 문제에 관하여 이미 방침이 정해졌다는 문체비서관실의 의견을 듣고 왔다고 진술한다), 신은미 도서가 문제된 것은 2014년 세종도서 3차 심사가 완료된 2014. 11. 14. 이후이므로 소통비서관실에서 2014년 세종도서 심사절차 또는 도서신청 접수 이후 진행되는 심사위원 위촉절차에 관여할 여지도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 조윤선의 지시로 그 후 2015. 7. 28. 공모가 시작된 2015년 세종도서의 심사위원 추천에 정무수석실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정무수석실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에 정무수석실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정무수석실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조윤선이 2014년, 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조윤선의 공동정범관계

앞서 본 것처럼 세종도서 지원배제의 경우 정무수석실에서 신청자 명단을 검토하여 배제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정무수석실에서 2014년, 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그 지원배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 미래한국의 보도가 발단이 되어 유진룡 장관이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그 후속조

치로 문체부가 심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정무수석실이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조운선이 세종도서 선정 과정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 실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조운선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우선 이 사건 판결 내의 사실관계와도 모순된다. 문예기금 지원배제와 관련하여 김상률의 공범관계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판결은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일관되게 피고인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문예기금 지원배제 과정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 김상률이 교문수석으로 부임한 후 김종덕 장관이 2014. 10. 21.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및 그와 관련한 대통령 서면 보고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보고하였고, 2015년 문예기금 공모접수를 마친 후 신청자목록에 올라왔을 때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통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선별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피고인 김상률에게 설명을 하고 기존 시스템대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지원심의 과정에서 특이사항이나 양해요청이 있는 경우 중간보고 형식으로 심사현황을 계속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 김상률도 피고인 김소영으로부터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무수석실의 스크린을 받는 시스템 자체는 보고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라고 하여 2015년 문예기금 지원배제 과정에 “정무수석실의 스크린을 받는 시스템”이 작동되었고, 그에 따라 지원배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2015년 문예기금 공모접수는 2014. 10.경 공고가 이루어지고 2014. 11. 중순경까지 총 959명이 지원을 마친 상태였는데, 당시는 피고인 조운선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다. 지원배제 프로세스 자체가 이미 “스크린을 받는 시스템”으로 수립되어 있었고, 그대로 이를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의 승인권자인 피고인 조운선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인정할 다른 사실관계와 모순된다.

또한 공범을 인정하는 기능적 행위지배와 관련한 판단에 대한 기준도 다른 피고인과 상이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예컨대 김상률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피고인의 부임 당시 이미 그 계획이 상당부분 수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단지 보고 받고 승인하였을 뿐”이지만 직권남용을 인정한 것에 비하여 조운선의 경우에는 매우 구체적인 기획과 직접적인 지시 및 구체적인 실행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에 맞지 않다. 이 사건 판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소위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따라,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시하여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하여 그 시스템을 마련하여 관철시킨 것인데, 피고인 김상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상당부분 수립된 ‘시스템’에 따라 보고 받고 승인하였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4. 양형이유의 반 헌법성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양형요소(문화예술계 지원배제 : 피고인 김기춘, 김상률, 김소영)와 관련하여 “헌법위배, 누구보다 철저히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부정하는 행위, 블랙리스트가 문체부를 통해 예술위 등에 하달되면서 지

원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 그 과정에서 예술위 등의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문체부 실무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었고, 금지였던 그들의 직업이 수치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는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하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은 보수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들로,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 되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정 개인 등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남용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이어서 이를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거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대통령의 의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익실현의무를 철저히 저버린 것이고, 헌법의 기본적인 예술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여 국가가 사인을 ‘분류’하여 불이익을 준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면이라고는 전혀 없는 오히려 전 국가 조직을 개인의 의견의 관철을 위해 동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벌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 또한 지금까지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위 양형에 관한 유리한 정상으로의 사유는 권력자들에게 또다시 ‘성향에 따라 국민을 분류하여’ 지원 여부를 정하는 정도는 해도 되겠구나 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법비’라고 불리는 김기춘의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로 그동안 공직생활 과정에서 훈장 수여를 국가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언급하고, 지난 정권의 온갖 요직을 거치며 그 권한을 행사해온 조윤선에 대해서 마치 ‘블랙리스트’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언급하여 양형에 참작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1심 판결이 남긴 것들

이양구(극작가, 연출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공동대표)

1심 판결을 마주하며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7명의 피고인 중 김기춘에 대하여는 직권남용 등이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조운선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위증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을 뿐 블랙리스트 관여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김기춘에게 내려진 낮은 형량, 조운선에게 내려진 블랙리스트 무죄 선고는 시민들의 법감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각계 각층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의 즉각적인 분노는 유예된 것이 조운선에 대한 형집행이 아니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감정의 정당한 표출이었지만, 판단대상이 죄형법정주의와 책임 개별화의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형사재판인 만큼 뜨거운 분노를 차가운 이성 위에 올려놓고 차분히 검토하는 절차 또한 거쳐야 할 것이다. 블랙리스트가 훼손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등의 원칙 등 못지않게 적법 절차의 원리와 죄형법정주의 또한 중요한 헌법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가운 이성으로 1심 판결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이번 판결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법정

이번 재판과정은 진짜 피해자의 목소리가 사라진 법정이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재판이었다. 특검은 제한된 활동 기간 때문이었겠지만 이번 블랙리스트 사태의 최대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 예술가들이 겪었던 구체적인 고통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차관급 이상을 서둘러 기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 현장 예술가들을 상대로 지원 배제 행위를 직접 실행했던 문체부 및 산하 기관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강요의 '피해자'로 상정하고 김기춘, 조운선 등 피고인들을 소추하게 되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김기춘과 조운선의 강요죄 부분에 대한 무죄 이유에서 밝히고 있듯, 문체부 및 산하 기관의 공무원들은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자기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 받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로 겁을 먹은 상태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지난 2017년 6월 공개된 문체부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에서 감사원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소속 장관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은 직무상 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 강령 5조」를 인용하여 블랙리스트 실행은 문체부 및 산하기관이 따를 필요가 없는 위법 부당한 지시였으며, 부당한 차별행위였음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⁶⁾

연극계 현장만으로 좁혀서 돌아보더라도 그들은 결코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 받은, 겁을 집어먹은 자들이 아니었다. 가령 2015년 4월 5일 아르코예술극장에 구동장치가 고장났다며 극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서울연극계 공연이 올라가는 것을 막았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당시 권영빈 위원장)는 극장 폐쇄 직후 ‘서울연극계 대관 거부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 2’를 발표했는데(2015년 4월 15일, 한국공연예술센터 게시판 104762) 그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술위의 존재 이유는 현장에 있습니다.”, “서울연극협회가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서울연극계의 대관탈락에는 사회비판적인 작품을 걸러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밝히는 등 상황을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연극계의 성공을 위해 예술위는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예술 현장의 동반자인 예술위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각종 언사 및 의혹 제기는 상황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황이 악화된다면 강력히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등.

그러나 2016년 12월 26일 SBS에 공개된 2015년 5월 21일 자 문체부 대외비 문건은 ‘서울연극협회 등 편향 단체가 관행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에 대한 철저 심사를 통해 지원 차단 조치’를 실행했다고 보고하면서, “서울연극협회 아르코 예술극장 대관 배제”라고 명시하였던 것이다.

당시 아르코 예술극장 공연을 앞두고 극장이 폐쇄되는 청천벽력을 맞은 연출가 한 명은 “26년 동안 공연을 하면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것이 꿈이었다. 서울연극계에 들어왔고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공연한다고 좋아했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라면서 울었다.⁷⁾ 그녀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의 실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술가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1심 법정에서 울려 퍼진 진짜 피해자의 목소리는 지난 2017년 4월 6일 방청석에서 김기춘을 향해 “얼마나 많은 연극인들이 힘들어 했는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라고 외쳤던 임인자(전 변방연극계 예술감독)의 것이 유일했다. 임인자는 6월 28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여 김기춘을 향해 “뭘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외치다 법정에서 끌려나왔다.

정작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할 기회를 얻은 것은 가령 2015년 창작산실지원사업에서 박근형 연출가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배제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다가 여의치 않자 연

6)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2017.06. 119쪽~120쪽.

7) 「서울연극계 “아르코예술극장 임시휴관 이해 안돼」, 2015.04.07. 뉴시스.

출가를 직접 찾아가서 포기 각서까지 받아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용석 부장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2017년 5월 12일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을 했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 지원부장. 이 자리는 예술인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자리로, 저의 기쁨이자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배제 리스트가 시작된 이후 저의 자리는 고통이자 슬픔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산하기관으로서, 정부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100보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이 부당한 경우 70보, 50보, 30보로 줄여서 가는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지난 어둠의 시대, 1984의 시대, 보폭을 줄여 가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술인 여러분의 양에 차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장용석의 “피해자” 진술을 들은 특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진술에 가슴이 멍멍해졌다”며 “블랙리스트 집행을 강요받았던 문예위 등 문체부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⁸⁾ 장용석은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SNS상에서 보기 드문 참회록을 들었다든가, 섬세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까,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그의 섬세한 영혼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기관운영감사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블랙리스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내려온 것은 이미 2014년 3월이었지 2015년이 아니었다. 게다가 재판부가 범죄 일람표에서 밝히고 있듯 그가 관여된 지원배제 리스트는 숫자를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지원 배제된 예술 작품 하나하나마다 적게는 한 명의 작가에서 많게는 수십 명의 공연 참가자들의 고통이 서려있는 것이다. 형사법적으로는 포괄일죄(包括一罪)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통 받은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으며 그들이 겪은 고통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있다.

장용석은 2015년 11월 발표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2015년 지원심의 관련」에서는 2015년 당시 창작산실 지원배제 사태를 폭로한 김미도 심사위원에게 “박근형 연출가를 만나 직접 우려를 표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위원중 한 사람(박근형 연출가를 만나라고 제안한 위원)을 만나 박근형 연출가의 사업포기와 관련하여 의논하였고…” 등 진술을 통해서 김미도 심사위원을 지원배제에 가담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법정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는 “자연스러운 탈락이 어려운 신청자들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여 심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탈락이 되도록 하였다.”는 판결문으로 남았다.

그러나 2015년 당시 창작산실 사태는 장용석 등이 박근형 연출가를 직접 찾아가서 포기 각서를 받아낸 다음 행정시스템에 (아마도 문예위 직원 중 누군가) 극단 아이디어로 대신 접속하여 포기 신청서를 처리한 것이지 “심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탈락이 된 것이 아니었다. 2015년 창작산실 지원심의 과정에서 장용석 등에게 심사 결과를 반복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던 피해자 심의위원을 지원 배제를 함께 논의한 가해자로 바꾸어버린 것이다. 이밖에도 지난 3년 동안 1심 법정에서 아예 다뤄지지도 않은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연극 현장에서는 끊이지 않았다.

가령 2015년 10월 1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당시 유인화 센터장)는 당시 국제공연

8) 「문예위 부장 “저의 자리는 고통이자 슬픔의 자리”.. 블랙리스트 재판서 피해자 진술」, 2017.05.12. 중앙일보.

예술제 공연기간 동안 자신들이 기획했던 팝업씨어터 <이 아이>(조엘 폼트라 원작, 김정 연출) 공연에서 ‘수학여행’, ‘노스페이스’ 등 고등학생들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등장하자 ‘세월호’를 연상 시킨다며 담당 직원에게 다음 날 공연을 취소시킬 것을 지시했다가 거부당하자 다음 날 공연장에서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예술센터장과 문화사업부장(당시 임수연) 등이 직접 나서서 공연을 일시 중단시키는 일이 벌어졌고, 이후 공연이 예정된 윤혜숙, 송정안 두 연출가에게 대본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두 연출가가 공연 보이콧을 선언하자 문예위는 공연 취소 공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공연을 보러온 관객을 조용히 돌려보내기까지 했다. 세 연출가를 중심으로 문예위가 운영하는 대학로 예술극장 앞에서 한 달 가까이 시위가 계속되었지만 문예위(당시 박명진 위원장)는 문화사업부장의 개인적 잘못으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화적 제노사이드에 대한 기도 저지른 죄를 다 담지 못하는 형사 소추 죄목들

블랙리스트가 연극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은 그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단히 치졸하고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번 소추 과정에서 적용된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강요 및 위증의 죄목 등은 이번 사태가 파괴한 법익이 무엇이었는지 미처 다 드러내지 못한다.

1심 판결이 밝히고 있듯 블랙리스트는 단순한 지원배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청와대 비서실이 기획하고 국정원이 리스트 작성 및 실행 과정에 개입하고 문체부 및 산하 기관이 직접 실행에 가담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회귀하고자 “문화적 제노사이드”를 기도하였던 사태라고 보아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실정 형법이 예정하지 못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거나 애초에 다른 형사법 조항으로 소추가 검토되었어야 했던 사안이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담당 부서도 아니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공범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논리가 참으로 충격적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주의를 표방하여 당선되었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판시 이유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표방하고 당선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지만, 설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지지로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헌정주의의 요구에 따라서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블랙리스트는 대한민국 헌법 11조 평등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며⁹⁾,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국민 전체”를 위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¹⁰⁾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1심 판결은 헌법

9) 최성호, 「블랙리스트 판결문에 드러난 황병헌 부장판사의 ‘무지’」, 2017.08.02. 허프포스트.

10)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 기초하여 내려진 판결인 것이다.

권한에 걸맞는 책임의식을 보여주지 못한 조운선

1심 판결에서 시민들이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에서 조운선에게 무죄가 선고된 대목일 것이다.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조운선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 이를 업무 내용으로 인계받고 자신의 업무로 인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재판부는 조운선이 2016년 10월 13일 국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하여 “어제 그제는 또 블랙리스트라는 게 나왔어요. 그거 존재합니까?”라는 한선교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습시다.”, “이 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전희경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저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시다.”라고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데 그쳤다.

한편 재판부는 2016년 11월 30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1차)”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리스트 관련해서 2014년 여름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지원하지 말아야 될 문화예술 인사 그리고 단체 명단 작성했다는 증언이 복수의 전직 그리고 현직 문체부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이라는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저는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전혀 제 소관 업무도 아니고, 저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조운선이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뒤 전임 박준우 정무수석으로부터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업무 인계를 받았는지, 신동철 정무비서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 현황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블랙리스트 지침을 정관주 소통비서관에게 전달하고 김소영 문체비서관 등과 협의하여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라고 지시하고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는 항소심에서 밝혀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1심 판결과는 별도로 “오해를 풀어줘 고맙다”며 사과 한 마디 없이 집으로 돌아간 조운선이 청와대 정무 수석 및 문체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행정 기관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아무런 정치적 책임의식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문체부를 비롯한 한국의 행정조직 공무원들이 권한과 책임의 일치 원리에 따라서 배분받은 권력이나 권한을 일종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법에 따라 정해진 자기 자리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어진 일을 자기의 재산권과 같이 생각하고 끝까지 지키고자 노력해야한다는 점¹¹⁾을 생각하면, 구치소에서 출소 직후 조운선이 보여준 태도는 고위 공직자를 지낸 사람으로서 자기가 책임을 맡았던 행정부서가 망가진 데 대한 최소한의 반성적 태도조차 보여주지 못한, 지나치게 사사

11) 조석준·임도빈(2016), 『한국행정조직론』, 23쪽. 법문사.

롭고 매우 실망스러운 자세였다.

블랙리스트 재판은 형사 법정이자 역사의 법정

1심 재판부가 내놓은 판결은 이번 블랙리스트 재판이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이면서 동시에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고 새롭게 출범한 민주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재판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번 형사법정에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동시에 역사의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단지 과거의 국정농단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재판에 임했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기춘에게 징역 3년, 조운선에게 블랙리스트 무죄에 위증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라면 10개를 훔친 사람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던 법원의 과거 판결과 비교되어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시민들은 법원이 김기춘과 조운선 등에게 들이댄 양형의 잣대[尺]가 그동안 다른 시민들에게 들이댔던 잣대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다고 느낀다. 고려시대 죄인을 심문하던 형장(刑杖)으로 금척(金尺)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사물을 재는 척도가 곧 죄를 묻는 척도로도 사용됐다는 것을 알려준다.¹²⁾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뒤 사물을 재는 척도[度量衡]는 꾸준히 발전시켜 생활 속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나 법의 척도는 아직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미 내려진 1심 선고를 되돌릴 수는 없으니 항소심 재판부가 이 역사적인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정초 지을 수 있는 잣대를 사용해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판사 블랙리스트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우리는 조운선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건설된 근대국가에서 재판 과정은 행정처리가 아니라 공식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최후의 고민 과정이므로 선고 결과만을 두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¹³⁾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편 사법부 스스로도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한때 연극 현장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주역을 맡았고 지금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대법원 윤리위원장 직을 겸직하고 있다가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을 담당하게 될 처지에 놓이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블랙리스트를 가혹하게 적용했던 박명진도 대법정의 판사들 앞에서는 자리를 피하는 염치를 알았던 것일까.

12) “刑杖式(尺用金尺)”(『高麗史』 권84, 형법1 명례, 이종봉(2016) 『한국 도량형사』, 114쪽에서 재인용)

13) 유병진(2008), 『재판관이 고민』, 26쪽. 법문사.

이 나라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기관장이었던 김종덕, 조운선 문체부 장관 이하 권영빈,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무런 존중을 받지 못했던 문화예술인들이 법정의 판사들에게 존중받기를 기대한 것은 지나친 기대였을까. 1심 판결문 어디에서도 문화국가의 원리를 채택한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문화예술이 무엇이며 문화예술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블랙리스트 사태를 직권을 남용하여 지원금을 배제한 사태 정도로 이해하는 한, 블랙리스트가 배제한 세계가 실은 수많은 예술가들을 통해서 존재 가능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한 채로 사라져버린 다채로운 세계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김기춘과 조운선에게 선고된 형량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인간의 삶과 문화예술의 가치

블랙리스트 사태를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문화예술이 인간의 삶에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었다는 데서 큰 공이 있다. 문화예술이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처럼 몸서리치는 슬픔과 고통이 파도치는 이 세계에서, “우리 아이 덕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라고 말했던 어느 유가족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만남의 지평을 깨닫게 해주고 인간이 가난한 삶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¹⁴⁾

사실 연극계 현장에서 한때 블랙리스트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했으면서도 사과 한 마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지원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고통이 가슴에서 사라지기가 어렵다. 가령 한때 굶어죽은 가난한 작가의 삶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조차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다고 감사원이 밝혔는데도 대표라는 사람이 아무런 사과 한 마디 내뱉은 적도 없는 것이 문화예술계의 현실이다.

산불이 지나가면서 선채로 불타 죽은 나무들 사이로 여린 새순이 다시 올라오듯 새로운 세대는 자라나고 사람들은 다시 살아가지만 돌이킬 수 없이 큰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 상처가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과거를 교훈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14) 김상봉(2003),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 313쪽. 한길사.